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변종오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,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충청북도 차원의 마약 중독 치료와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
나.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(안 제4조의2)

다.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제1항제5호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와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,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됨. 기존 조례에는 실태조사 및 익명 검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, 효과적인 예방

및 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.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차원에서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,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.
- 또한,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마약 피해자가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기 치료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나.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개정안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, 오히려 지역 차원의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.
- 실태조사와 익명 검사 지원 규정은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며, 중앙정부의 마약류 예방 정책과도 일관성을 가짐. 다만, 익명 검사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 및 대상,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함.
-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4조의2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.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·생애주기별에 따른 인식 및 오남용 실태 등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·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함.
 - 안 제5조는 치료보호 및 사업 등에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 근거를 신설함.

-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5. 3. 5. ~ '25. 3. 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다.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구성 및 표현이 명확하며,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도 적절하게 유지됨.
- 실태조사 규정(안 제4조의2)에서 성별 및 연령별 분석을 명시하여,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.
- 다만, 익명 검사 지원(안 제5조제1항제5호)의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마약류 예방 및 치료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실태조사 및 익명 검사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부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